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467호
- 나. 제 안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19명)
- 다. 제 안 일 : 2026년 2월 9일
- 라.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제6조는 동일한 법정 개념을 규정하면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조명 환경 관리지역”을 혼용하고 있어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이에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통일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상위법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제24조제1항은 점등·소등시간의 통합·개별관리 주체가 본문에 명시되지 않고 단서에만 ‘관리청’이 등장하여 권한·의무의 귀속이 불명확하므로, 운영주체를 ‘관리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서의 조정권 규정도 본문 주체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가.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관리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정비하여 용어를 일괄 통일함

- 나. 제24조제1항의 점등·소등 시간 운영(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의 행위주체를 ‘관리청’으로 명시하고 이에 “관리청”의 정의를 제2조제6호에 신설하여 기상 상황 등 안전상 필요에 따른 점등·소등시간 조정 권한을 같은 주체(관리청)로 일관되게 규정하도록 문장구조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조명, 보안등, 공원등의 공간조명에 대한 운영주체인 ‘관리청’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6호)하고 관련조문에서 생략된 운영주체인 ‘관리청’을 명시하는 한편 단서조항의 ‘관리청’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안 제24조제1항)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현행 조례에서 “조명환경 관리지역”과 혼용하고 있어 이를 상위 법령의 용어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규정(안 제6조 및 제26조)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관리청”이란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명설비를 설치·관리할 권한을 가진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u></p>
<p>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u>조명환경 관리지역</u>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 ----- ----- -- <u>조명환경관리구역</u>----- --.</p>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 관리 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빛방사 허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의 공간조명 점등 시간은 일몰 15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15분 전으로 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 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개선·정비하는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조명환경관리 구역의 지정목적----- 조명환경관리구역을 -----
-----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을 -----
-----.

③ ----- 관리구역의 -----
----- 관리구역별 -----

-----.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관리청은 도로조명-----

-- 개별관리하여야 ----. ---- 안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

-----.

1. 조명환경관리구역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 내용

“개정안 검토”

1) 관리청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6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6호는 현행 법령¹⁾ 및 조례에 조명설비의 관리주체인 ‘관리청’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어 관리 권한 및 의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리청’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명설비(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 등)를 설치·관리할 권한을 가진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관리청”이란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명설비를 설치·관리할 권한을 가진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이는 조명설비에 대한 관리주체를 ‘관리청’으로 정의함으로써 조명설비의 설치·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례 용어 정비 (안 제6조 및 제26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26조는 현행 조례의 ‘조명환경 관리 지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u>조명환경 관리지역</u>을 지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목적</u>이 상실되거나 <u>조명환경 관리지역</u>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u>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1항 각 호의 <u>관리지역</u>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u>관리지역별</u>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빛방사 허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u>조명환경 관리지역</u> 중 자연환경과 주</p>	<p>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 ----- ----- -- <u>조명환경관리구역</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조명환경관리 구역의 지정목적</u>----- <u>조명환경관리구역</u> ----- ----- <u>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u> ----- -----.</p> <p>③ ----- <u>관리구역의</u> ----- ----- <u>관리구역별</u> ----- ----- -----.</p> <p>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 ----- ----- -----.</p> <p>1. <u>조명환경관리구역</u> -----</p>

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 기구를 개선·정비하는 경우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법 제9조제1항2)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6조 및 제26조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조례의 용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통일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해석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3) 운영주체 명시 (안 제24조제1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1항은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의 공간조명에 대한 점등 및 소등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본문에서 생략된 운영주체인 ‘관리청’을 명시하고 단서조항의 운영주체인 ‘관리청’을 삭제하여 해당 조문의 문장구조를 정비하고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 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또한 제24조제1항 본문 중 “~개별관리 한다”를 “~개별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공간조명의 점등·소등 관리가 관리청의 권한·의무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의 공간조명 점등 시간은 일몰 15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15분 전으로 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 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u>관리청은 도로조명</u> ----- ----- ----- --- <u>개별관리하여야</u> ---. --- <u>안개</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청’에 대한 정의 신설과 용어 혼용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간조명의 점등 및 소등의 운영주체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6호는 ‘관리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명설비의 설치·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26조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점등 및 소등 운영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본문에 ‘관리청’을 명시하고 단서조항의 ‘관리청’을 삭제하여 조문 구조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울러, 제24조제1항 본문 중 “~개별관리 한다”를 “~개별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은 공간조명의 점등·소등 관리가 관리청의 의무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